#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14

발의연월일: 2022. 6. 30.

발 의 자:정점식·김용판·김태호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유경준 • 이달곤 • 조수진

조해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거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 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 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 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의 지위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선박용 물건 등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
-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의2 신설, 제78조, 제85조).

- 라.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
- 마.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신설(안 제83조, 안 제86조).
- 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89조).

#### 법률 제 호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형식승인의 취소·정지"를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형식승인시험의 취소"로 한다.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선박용 물건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 또는 교환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23조제6항제2호 중 "거짓"을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절차, 형식승인의 취소 및 정지, 형식승인시험의 취소,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① 제9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 으로 한다.

제83조제5호 중 "받은"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으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받은"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으로 한다.

제85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6조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89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
	<u>속인</u>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
	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
	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u>설립되는 법인</u>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
	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
	<u>여야 한다.</u>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u>얻은</u>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반은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 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 2. <u>거짓</u>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신 설>

3. ~ 5. (생 략)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

<u>제1</u>
<u>ō</u>
1
<u>받은</u>
2. <u>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u>
<u> 짓</u>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u>2</u> 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u>때</u>
<u>भ</u>
<u>때</u> 3. ~ 5. (현행과 같음)
<u>때</u>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때3. ~ 5. (현행과 같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
때3. ~ 5. (현행과 같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ul> <li>때</li> <li>3. ~ 5. (현행과 같음)</li> <li>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li> </ul>
때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         여야 한다.
<ul> <li>때</li> <li>3. ~ 5. (현행과 같음)</li> <li>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 여야 한다.</li> <li>③ (현행 제2항과 같음)</li> </ul>

산부렁으로 정한다.

<신 설>

\_\_\_\_\_

-----.

제19조의2(선박용 물건의 성능검 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 정을 받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 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저 검정 등) ① ~ ⑤ (생 략)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거짓</u>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신 설>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	시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1 7
정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	또는
교환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	부렁
으로 정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 ⑤ (현행고	나 같
<u>ㅇ</u> )	
6	
,	
<u>.</u>	
1. (현행과 같음)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	
<u>거나 거짓</u>	
	- 1 -1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 때	<u> </u>
ин	

3. (생 략) <u><신 설></u>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u>⑧</u> <u>제7항</u>
<u>절차,</u> 형식승인
의 취소 및 정지, 형식승인시험
의 취소,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
<u>속인</u>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
과 한병하 경우 한병 후 존

<신 설>

⑧ (생 략)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19조제1항</u>에 따른 형식승 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 11. (생략)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속하	=	법인	이	}	합병	<u> </u>	로
		설립	티는	법인	<u>)]</u>				
	10	제9	항에	따	라	사업	사의	] >	지
	<u>위</u>	를 승	-계호	<u> </u>	는	지우	를	승?	네_
	<u>한</u>	날투	브터	1개	월	이나	에	해역	샹
	<u>수</u>	산부	정으:	로 🧦	정하	는	바이	) t	다
	라	해양	i 수	· -	장관	에거	] 신	卫さ	카
	여	야 힌	다.						
	<u>(1)</u>	(현	 탱 제	8항	과 >	같음	)		
제	78	조(청	문)						_
									- —
									- —
									_
	1.	(현형	]과	같음	-)				
	2.	제19	조제	1항	또늯	<u> </u>	1192	준의	2
		제2힝	 -						- —
									- —
									-
			-						
	3.	~ 1	1. (ই	현 행	과 >	같음	)		
제	83	조(벌	칙)						-
									_
									_

- 1. ~ 4. (생 략)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제4항·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 6. 7. (생략)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 9. ~ 14. (생략)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u> (생 략) 1의2. ~ 8. (생 략)

-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
<u> </u>
8
받거나 컨테이너형식
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9. ~ 14. (현행과 같음)
]85조(벌칙)
00工(巨寸)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u>따르지 아니한 자</u>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2. ~ 8. (현행과 같음)
86조(벌칙)
4 (51 51) 1 (51 6)
1.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u>1의2.</u> (생 략) 2.·3. (생 략)

제8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신 설>

4. ~ 28. (생략)

③ • ④ (생 략)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의4.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 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4. ~ 28.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